

이 추록은 2024 『IMPACT(임팩트) 세법학 I·II』 제19판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.

1. 임팩트 세법학 I 정오사항

면	행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2-94	상 15	(결산조정사항)	(결산조정전제)
	상 16		
2-203	상 18	있음)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.	있음)을 말한다.
3-120	상 4	기준에 해당하는	기준 이상에 해당하는
4-42	상 1	문화재자료 등의	문화유산자료 등의
4-130	상 13	접대비	기업업무추진비
4-133	상 14	㉠ 출연재산가액에 ~ 사용할 것	〈삭 제〉
	상 15	㉡ 그 밖에	㉡ 그 밖에

◆ p.2-78 하 3~1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.(개정)

- ① 주주(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제외) : 배당
- ② 직원(임원 포함) : 상여
- ③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: 기타사외유출
- ④ 위 ①~③ 외의 자 : 기타소득

2. 임팩트 세법학 II 정오사항

면	행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1-7	상 15	8,000만원	1억 400만원
1-139	하 4	8,000만원 이상	1억 400만원 이상
	하 3	8,000만원 미만	1억 400만원 미만
2-10	하 6 (개정)	2024년 4월 30일까지는	2024년 6월 30일까지는
3-14	상 12	법인(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)	법인(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)
4-49	상 19	과세표준 60억원	과세표준 120억원
4-57	하 10 (개정)	6.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	6.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
	하 6 (개정)	무역조정지원 기업이	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이
4-81	상 9 (개정)	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	농장이양은퇴보조금의
	상 19 (개정)		
4-115	상 9	자산으로서 24%~80%의 공제율을	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(최대 80%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)을
4-128	하 3	4천만원 미만	7천만원 미만
4-129	상 3	4천만원 미만	7천만원 미만
4-146	상 4	법정기부금* + 지정기부금	특례기부금* + 일반기부금
4-182	상 10	(1) <u>익금불산입</u> 또는 과세이연	(1) 과세이연

◆ p.3-27 주식 10)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.

10)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- ①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
- ② 납세의무자의 해당 물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자
- ③ 건축물의 준공 전에 건축주의 지위를 양도한 자
- ④ 그 밖에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자

◆ p.4-22 하 4~3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.

세액공제액 =
출자시 투자금액*1의 5% + 주식 취득가액의 직전 3년 평균대비 증가분*2의 3%